

공 보

제511호 2015. 12. 2.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55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15-156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5-157호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소만1,2공원) 결정(변경) 고시 6
 거창군 고시 제2015-158호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1

공 고

거창군 공고 제 2015-1030호 특구계획 및 특화사업자 지정해제 공청회 등의 공고 ... 13
 거창군 공고 제 2015-1031호 특구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15-1035호 거열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 시발굴 조사 공시송달 재공고 · 23
 거창군 공고 제2015-103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거창군 공고 제2015-1043호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배치)지도사 채용 공고 31
 거창군 공고 제2015-105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37

회 람									
--------	--	--	--	--	--	--	--	--	--

공 보

제511호 2015. 12. 2.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5-155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
- 거창군 고시 제2015-156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5
- 거창군 고시 제2015-157호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소만1,2공원) 결정(변경) 고시 6
- 거창군 고시 제2015-158호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1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 2015-1030호 특구계획 및 특화사업자 지정해제 공청회 등의 공고 ... 13
- 거창군 공고 제 2015-1031호 특구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 16
- 거창군 공고 제2015-1035호 거열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 시발굴 조사 공시송달 재공고 · 23
- 거창군 공고 제2015-103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 거창군 공고 제2015-1043호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배치)지도사 채용 공고 31
- 거창군 공고 제2015-105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37

회 람									
--------	--	--	--	--	--	--	--	--	--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348호(2007. 08. 3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 2-14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5. 11. 26.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대평리 도시계획 도로(소로2-143 호선) 정비공사	거창	대평	소로	2	143	343	8.0	3,495	거창읍 대평리 1058-8	거창읍 대평리 593-3	경고348호 (07.08.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5. 12. 01.
- 준공 예정일 : 2017.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1,895.6	3,495					
1	거창읍 대평리	1057-4	도로	410	19	-	국(건설부)			
2	"	1058-7	도로	173	39	-	국(국토 교통부)			
3	"	1057-6	답	1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11	윤덕이			
4	"	1058-8	답	284	284	-	거창군			
5	"	996-3	답	99	99	-	거창군			
6	"	996-1	도로	66	25	-	거창군			
7	"	1058-3	도로	3	3	동동	신상문			
8	"	1472	도로	410	61	-	국(건설부)			
9	"	998-14	답	77	77	-	거창군			
10	"	997-10	답	266	266	-	거창군			
11	"	998-13	답	124	124	-	거창군			
12	"	598-1	도로	1,947	51	-	국(농림 수산부)			
13	"	10-2	구거	28,732	116	-	국(농림 수산부)			
14	"	598-2	답	201	201	-	거창군			
15	"	610-5	답	128	128	-	거창군			
16	"	610-4	답	10	10	-	거창군			
17	"	597-4	답	304	304	-	거창군			
18	"	609-4	답	16	16	-	거창군			
19	"	609-3	답	3	3	-	거창군			
20	"	596-1	답	372	372	-	거창군			

21	"	608-2	답	17	17	-	거창군			
22	"	607-7	답	8	8	-	거창군			
23	"	595-1	도로	3,690	247	-	국(농림수산부)			
24	"	595-2	답	149	149	-	거창군			
25	"	607-6	답	24	24	-	거창군			
26	"	595-11	답	178	178	-	거창군			
27	"	594-4	답	322	322	-	거창군			
28	"	607-5	답	3	3	-	거창군			
29	"	594-3	답	72	72	-	거창군			
30	"	593-5	답	85	85	-	거창군			
31	"	606-1	답	10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8길 81	마복수			
32	"	593-6	답	28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주식회사 한국토지신 탁			
33	"	593-4	답	136	136	-	거창군			
34	"	1516-0	도로	3547.6	17	-	거창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거창군수

-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친환경 채소 재배)
-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 면적(m ²)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97	32,321	2,400	농지조성 (친환경 채소 재배)	16,940	2015.11.26 ~ 2016.11.30	거창군 거창읍 대평9길 **	구**

-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4)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소만1,2공원)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9-317호(1999.12.23)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소만1,2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도시건축과,산림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일

거 창 군 수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원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소만1 공원	어린이 공원	거창읍 대동리 206-1번지 일원	2,170	-	2,170	경상남도 고시 제1999-317호 (1999.12.23)	변경 없음
기정	7	소만2 공원	어린이 공원	거창읍 대동리 117번지 일원	2,240	-	2,240	경상남도 고시 제1999-317호 (1999.12.23)	변경 없음

■ 조성계획(변경) 총괄조서

가. 소만1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170	2,170	100.0	100.0	
시설면적	1,176	1,099	54.1	50.6	
도로 및 광장	248	405	11.4	18.7	
휴양시설	354	352	16.3	16.2	
유희시설	183	235	8.4	10.8	
운동시설	391	107	18.0	4.9	
녹지면적	994	1,071	45.9	49.4	

2)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170	2,170	-		-		
시설계			1,176	1,099					감)78
도로 및 광장	소계		248	405					증)156
		도로	27	161					증)133
	1	미르광장	221	244					증)23
휴양 시설	소계		354	352					감)2
	2	휴게쉼터	354	352					감)2
유희 시설	소계		183	235					증)52
	3	여의주놀이터	183	235					증)52
운동 시설	소계		391	107					감)284
	4	운동마당	391	107					감)284
녹지및 기타	소계		994	1,071					증)78
		녹지	994	1,071					증)78

나)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기정				27					
	변경				161					
소로	기정	3	1	4.5	6	27	진입로	서측구역계	2	
	변경	3	1	4.5	6	28	진입로	서측구역계	2	
세로	신설		1	1.0	30	33	연결로	1	소로3-1	
	신설		2	1.0	85	100	연결로	소로3-1	3	

나. 소만2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240	2,240	100.0	100.0	
시설면적	1,179	1,178	52.6	52.6	
도로 및 광장	202	296	9.0	13.2	
휴양시설	390	279	17.4	12.5	
유희시설	442	493	19.7	22.0	
운동시설	145	110	6.5	4.9	
녹지면적	1,061	1,062	47.4	47.4	

2)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²)		건축면적 (m ²)		건축연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240	2,240			-		
시설계			1,179	1,178					감)1
도로 및 광장	소계		202	296					증)94
		도로	202	296					증)94
휴양 시설	소계		390	279					감)111
	1	휴게쉼터	390	279					감)111
유희 시설	소계		442	493					증)51
	2	정글놀이터	442	493					증)51
운동 시설	소계		145	110					감)35
	3	건강마당	145	110					감)35
녹지및 기타	소계		1,061	1,062					증)1
		녹지	1,061	1,062					증)1

나)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기정				51	202				
	변경				156	296				
소로	기정	3	1	2.5~7.5	24	93	진출입로	동측구역계	2	
	변경	3	1	5.0	11	57	진출입로	동측구역계	2	
	기정	3	2	2.5~7.0	27	109	진출입로	동측구역계	2	
	변경	3	2	4.5	15	69	진출입로	동측구역계	2	
세로	신설		1	1.0	106	128	연결로	소로3-1	소로3-2	
	신설		2	1.5	3	4	진출입로	서측구역계	세로1	
	신설		3	1.5	17	30	연결로	세로1	1	
	신설		4	2.5	2	4	연결로	1	세로1	
	신설		5	2.5	2	4	연결로	세로1	1	

2.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 산림녹지과(055-940-3484)

3.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4. 편입토지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 착수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삼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삼봉산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삼봉산권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사 업 구 역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봉산리 일원
4. 소재지 규모 : 법정리 2개, 자연마을 11개
5. 면 적 : 2,290ha (농림지역 : 1,152ha, 관리지역: 1,138ha)
6. 가구·인구 : 293호(농가:244호, 비농가:49호), 인구(649명)
7. 사 업 비 : 5,684백만원(국비 : 3,978백만원, 지방비:1,706백만원),
자부담 398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후 정산)
8. 사업의 효과 : 삼봉산권역의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9. 사 업 기 간 : 2012년 ~ 2016년(5년간)

10.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권역 다목적센터의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전 소득법인의 기금납입 협약 이행.

12. 주요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경·원기마을 도로정비, 다목적센터, 용초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구송마을 정자 건립
- 소득증대사업 : 사과저온저장고 및 사과선별장 1식
- 지역경관개선사업 : 원봉계마을 안길정비, 경관수목식재 및 산책로정비
-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마을경영지원등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940-3542)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지역특화발전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

특구계획 및 특화사업자 지정해제 공청회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및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해제안과 주민열람·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 지정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6.

거 창 군 수

1. 특구의 명칭

- 거창 외국어교육 특구

(Geochang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Special Zone)

2. 특구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95번지 등

3. 특구의 면적 : 206,885m²

4. 공고 기간 : 2015. 11. 26 ~ 12. 17(21일간)

5. 특구 해제의 필요성

- 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경남 서북부지역의 교육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2005년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음
- 나. 그동안 명품교육도시 육성으로 외지학생 유입 및 전국 최고 수준으로 4년제 대학 진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화 교육 인프라 확충, 지식복지도시를 향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

6. 특화사업

- 가. 사업기간 : 2006~2015년
- 나. 사업비 : 178억원
- 다. 특화사업 내용
 - 초·중·고 영어교육 강화사업
 - 영어캠프 지원
 - 영어학습센터 운영 등

7.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8. 규제특례 사항

-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9조제①항

- 초·중·고 교육법에 관한 특례
 - 7개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교원 및 강사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체류기간 상한 특례 :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및 고등학교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
- 사증발급절차 특례 : 초·중등학교 및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영어캠프 및 군민 영어학습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9.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 장소

가. 열람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 <http://www.geochang.go.kr>
(홈페이지 → 입법/공고/공시 → 거창 외국어교육 특구 해제(안))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창조산업과

나.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5-940-3432)

10. 의견 제출 기간 : 2015. 12. 3~ 12. 18.(16일)

11. 주민 공청회 개최

가. 목 적

- 거창 외국어교육 특구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나. 일 정

- 일 시 : 2015. 12. 11(금요일) 14:00
- 장 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 : 주민 및 외국어 교육특구 관계자

※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

특구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거창 항노화 힐빙(休·건강·장수)바이오산업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과 주민 열람·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6.

거 창 군 수

1. 특구의 명칭

- 한글 : 거창 항노화 힐빙(休·건강·장수) 바이오산업특구
- 영문 : Geochang Anti-Aging Heal-Being (Relaxation, Health & Longevity) Bio-Industry Special Zone

2. 특구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외 1,443필지

3. 특구의 면적 : 8,076,105m²

4. 공고 기간 : 2015. 11. 26 ~ 12. 17(21일간)

5. 특구지정의 필요성

- 정부의 「보건·고령친화산업」 성장과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 육성 상위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지역특화요소를 발굴하여 온천, 산림, 약초, 축제 등 향노화 힐빙 브랜드 거점도시 도약 과제실현으로 휴양·체험·건강·장수도시 기반구축을 통한 역사문화 탐방·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노화 힐빙특구 지정이 필요한 실정
- 온천, 청정 산림, 산양삼 등 약용작물, 창포, 사과딸기 등 「농·특산물을 원재료를 활용한 향노화 브랜드화」 하고, 풍부한 먹거리, 삼국시대 산성 역사문화 유산탐방, 축제, 오미자 등을 이용한 체류형 거점지역 탈바꿈을 위한 6차산업화 육성을 통해 「향노화 힐빙 거점도시 도약」으로 거창발전 도모

6. 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사업비 : 697억원
- 특화사업 내용 : 붙임참조

7.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8. 규제특례 사항 : 붙임참조

9. 재원조달 방법

- 사업비 : 697억원
 - 국비 : 234억원(33.6%), 도비 : 63억원(9.0%),
군비 : 286억원(41.2%), 기금 : 86억원(12.3%),
기타(자담, 민자) : 27억원(3.9%)

10.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방안

- 특구 지정 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 시 시행

11.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 장소

○ 열람방법

- 군 홈페이지 : <http://www.geochang.go.kr>

[홈페이지 → 입법/공고/공시 → 거창 향노화 힐빙(휴·건강·장수) 바이오산업특구계획(안)]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5-940-3432)

12. 의견 제출 기간 : 2015. 12. 3 ~ 12. 18.(16일)

13. 주민 공청회 개최

○ 목 적

- 거창 향노화 힐빙(휴·건강·장수) 바이오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일 정

- 일 시 : 2015. 12. 11.(금요일) 14:00

- 장 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 : 주민 및 희망하는 관계자

※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붙임 참조

- 1) 특화사업 내용
- 2) 규제 특례 사항

붙임1)

□ 특화사업내용

1. 향노화 휴양·체험 거점화 사업(5개 사업)

특화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규제특례
가조 온천 관광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조온천지 활성화를 통한 향노화 체험·관광 거점 개발 	11.0	-
향노화 힐링랜드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으로 향노화 산업의 기반구축 산림휴양·문화시설의 특성화 및 브랜드화 시킨 자연휴양림 조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98.0	-
거창 창포원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천댐 수몰지구내 미담수 국유지와 주변경관을 활용, 창포를 테마로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창포원, 농촌테마공원, 수변생태공원 조성 	80.3	-
친환경대중 골프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조온천 등과 연계하여, 평생체육으로 골프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대중골프장 운영 	74.0	-
천문우주 문화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성창의과학관, SLR관측국 등 밤하늘과 천문시설, 교육, 문화 등을 연계한 사업 	-	-

2. 향노화 생산·유통기반 구축(5개 사업)

특화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규제특례
가능성 건강약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미자+4』 약초재배단지 기반 조성으로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약초 가공시설 및 체험 활성화 오미자 체험 행사, 오미자축제 활성화 지원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제품 개발 및 직거래 활성화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3조 제1항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거함산 향노화약용식물 상품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용식물 대량 증식기지 조성사업 · 약용식물 공동 가공시설 건립 · 약용식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3조 제1항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센터 건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노화 농산물 가공 공동시설 설치 운영 · 가공창업교육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향노화 농산물 가공활동 희망 농업인들의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가공기술개발 및 이전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지원 등 	3.6	-
감동 스토리 있는 음식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육성 · 로컬푸드 음식 상품개발, 음식 브랜드 창출 · 음식 축제를 통한 향토음식 문화 활성화 	1.0	·특구법 제43조 제1항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맞춤형 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형의 마을만들기를 통한 향노화 마을 시스템 구축 · 향노화 거창 로컬 푸드 활성화 · 행복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 재미가 있는 젊은 농촌 만들기 	35.4	-

3. 「건강도시 거창」 브랜드 강화(8개 사업)

특화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규제특례
『내일의 건강도시 거창』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주도하는 ‘젊어지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건강한 생활터 조성사업 및 향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1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목적 체육관 건립 (경기장, 관람석, 체력단련실, 주차장 등) 	148.8	·특구법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공영자전거 “그린씽” 운영 지원 · 군민 자전거 교실, 자전거 문화체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공영자전거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정비 	5.0	-
거열성 군민산책코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역사문화자원, 산악자원과 연계한 힐링공간 창출 · 거열성과 연계한 역사 문화탐방 도보길 여행코스 개발 	70.0	-
아림 1004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계좌 1,004원 기부에 자발적 참여로 어려운 이웃 후원 	1.4	-
거창국제연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의 세계화 및 연극의 관광자원화 	51.5	·특구법 제33조 (도로법)
거창한마당 대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 관광 등 축제를 통해 지역 자원의 전국적 문화 상품화 추진 	49.8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거창 韓 전국산행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마당 대축제와 연계한 산행 저변 인구 확대 및 힐빙 프로그램 육성 	2.4	특구법 제33조 (도로법)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붙임2)

□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사업명
일반 규제 특례	제26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 항노화 약용식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기준 완화	· 항노화 약용식 물, 건강 약초 재배 농지	· 기능성 건강약 초산업 육성 · 거합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	· 재정투자사업이 포함된 특화사업 추진시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	· 특화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 거창 스포츠센터 건강프로그램운영 및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제33조 (도로법)	· 축제행사의 원활 한 진행과 방문객 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점용 허용	· 축제행사시 축 제 안내 간판 설치	· 거창국제연극제 · 거창한마당 대축 제
	제22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 축제행사의 참여자들 의 안전을 위해 차 량의 도로통행 금지	· 축제행사 구간 의 차량 통행 금지 요청	· 거창국제연극제 · 거창한마당 대축 제
	제23조 제1항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의 표 시 기준 완화(조 례로 별도로 정 함)	· 특구지역내 홍 보를 위한 주이용간판 및 선전탑 설치	· 거창국제연극제 · 거창한마당 대축 제
권한 이양 특례	제43조 제1항 (식품위생법)	· 식품의 표시기준 을 따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타 지역제품과 차별성 강화	· 거창 항노화 약 용식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표시 기준	· 기능성 건강약 초산업 육성 · 거합산 항노화 약 용식물 상품화 지원 · 감동 스토리 있 는 음식점 운영

공시송달 재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열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 시발굴 조사』에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관리자)의 사망,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재공고합니다.

2015. 11. 30.

거창군수

1. 사업명 : 거열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 시·발굴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공고기간 : 2015. 11. 30. ~ 2015. 12. 14(14일간)
4. 협의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5-940-3432)
5.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조사면적		비고
				주소	성명		당초	변경	
1	거창읍 가지리	산157	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주소 불명)	신장수	1,785㎡	20㎡	300㎡	

6.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해당 서류가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
 - 본 청 : 276명 → 278명(증원 2명)
 - 사업소 : 45명 → 43명(감원 2명)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 (imf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
 - 현행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같음
- (2) 입법예고 : (2015. 11. . ~ 15. 12.)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295 293	14	128	65	63	49 51	37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7	292 290	14	100	37	63	47 49	37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8	278 276	11	94	33	61	43 45	36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배치)지도사 채용 공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할 청소년(배치)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거 창 군 수

<p>1. 채용분야 및 인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채용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지도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배치지도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td> </tr> </tbody> </table> <p>2. 시험방법</p> <p>가. 1차전형 : 서류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실무경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p>나. 2차전형 : 필요시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p> <p>3. 응시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걸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확정시 거창군 내 거주가 가능한 자 <p>4. 시험일정</p> <p>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5. 12. 01(목) ~ 12. 0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청소년수련관(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 ※ 접수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첨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p>나. 1차 서류심사발표 : 2015. 12. 8(화)/개별통지</p> <p>다. 2차 면접시험일/장소 : 2015. 12 9(수) 14:00 / 청소년수련관</p> <p>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2. 10(목) 개별통지</p> <p>5. 특기사항</p> <p>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p> <p>6. 서류접수시 제출서류</p> <p>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p> <p>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부착)</p> <p>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성장과정 및 경력 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p> <p>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p>	채용분야	인원	비고	청소년지도사	1명		청소년배치지도사	1명		<p>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p> <p>바. 경력증명서 1부(아래 사항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청소년수련시설(직영 위탁) 청소년지도사 실무 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청소년지도사 실무 경력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실무 경력 ※ “실무” 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하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득한 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청소년지도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경력(상담 복지지원 등)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 직인 날인 필요 <p>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1.2급 ITQ MOS ICIL</div> <p>아. 주민등록 초본 1부(병력사항 기재)</p> <p>자. 가족관계(기본)증명서 1부</p> <p>차.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p> <p>차.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과 관련된 증빙 자료</p> <p>7. 근무조건</p> <p>가. 근무기간 : 2016. 1. 1 ~ 2016. 12. 31</p> <p>나.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야간에 근무가능 / 토요일일 탄력적 근무 <p>다. 보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1,670,000원 ※ 명절휴가비, 수당 등은 내부기준에 의함 <p>라. 복 무 : 거창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적용</p> <p>8. 응시자 유의사항</p> <p>가. 시험계획은 거창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p> <p>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p> <p>다.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건강상 이유, 기타 사유 등이 발생하여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p> <p>라.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용함</p> <p>마. 기타 문의 :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 ☎ 940-8703</p>
채용분야	인원	비고								
청소년지도사	1명									
청소년배치지도사	1명									

응 시 원 서

경상남도 거창군수 귀하

본인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배치)지도사 선발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뒷면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응시 구분 청소년지도사	주소	전화 :					
		HP :					
	학력 (최종)	대학교	년	월	학교(과	년) 졸업
		대학원	년	월	학교(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 시 원 서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 일원판이어야 함
	(청소년지도사) 채용시험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시구분 청소년지도사	응 시 표		성명 (한글)					사 진 (2)
	청소년지도사 채용시험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2015년 월 일 거 창 군 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응시표를 2015년 면접 당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본인이 응시하고자하는 응시구분에 시간제로 기재 한다.
2.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자로 기재한다.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자기소개서

- 신청구분 :
- 성 명 :
- 생년월일 :

2015. .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업적, 기타능력 등이 상세히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 분량은 A4용지 2-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5-105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년 12월 2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지구명 : 군암지구
3. 위치 :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산149-4번지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98,952㎡
신청면적 4,600㎡
5. 사업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사업비 : 32,000천원(부지조성 20,000천원, 기타 12,000천원)
7. 사업기간 : 2015. 12 ~ 2016. 12.(12개월)
8. 이의신청기간 : 2015. 12. 01 ~ 2016. 01. 01.(30일간)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